

〈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〉

-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,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.
-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**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** 가능합니다.

*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(30만원 이상 → 제한 없음).

*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(<https://ncv.kdca.go.kr>)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-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,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
- 2021년 5월 17일(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)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*단, 기준 기저질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은 제외
- (지원대상) 이상반응으로 신고되거나 피해보상 신청사례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, 중증이면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(심의기준, ④-1 해당)

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



01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,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신청기준을 기존 **본인부담금 30만원**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, **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**하였습니다.

*심의주기 단축운영: (기준) 분기별 1회 → (개선) 월 1회

02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
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「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」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
03 피해보상 청구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
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



-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
- 진료확인서(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)
- 신분증*
-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-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(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)
- 접종 후 의무기록사본(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)
- 접종 이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(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, 있는 경우 제출)

장애인 일시보상금신청	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· 진단서(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)· 신분증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· 사망진단서·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· 부검소견서

*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
04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상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·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**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에 이를 보상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- 사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.

*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.

0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?

- **진료비**(본인부담금) 및 **정액간병비**(입원치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)
- **장애인일시보상금**
- **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**



06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?

제증명료, 영양제 수액(알부민 등),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단, 포도당,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 대상에 포함

0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,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?

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”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,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.



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

- (근거 법령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1조, 시행령 제29~제31조, 시행규칙 제47조
- (보상 종류)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, 사망·장애인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- (보상대상자)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(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-9호)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등
- (보상신청기한)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
- (보상신청 가능 횟수) 1회에 한하여 가능